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683호 2019. 2. 1.(금)

【조 례】

【규 칙】

- 제551호 공주시 문화제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제552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훈 령】

【예 규】

- 제240호 공주시 축제 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 일부개정규정 6

【공 고】

- 제2019-86호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7
- 제2019-131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제2019-139호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
- 제2019-163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 제2019-183호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규제영향분석서 포함)

【고 시】

- 제2019-17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 62
- 제2019-18호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 65
- 제2019-19호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 67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 ☎ 041-840-2052)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 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9. 1. 23.)에서 의결된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9년 2월 1일

공주시 규칙 제551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주직원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의5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직원을 포함한 가족이 이주한 경우 : 300만원

②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목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축제 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9년 2월 1일

공주시 예규 제240호

공주시 축제 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축제 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입 법 예 고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공 주 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의 참여 보장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규정 (안 제4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규정 (안 제5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임기 규정 (안 제6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 규정 (안 제9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자문단 규정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 화 : 041) 840-8053, FAX: 041-840-3713

4.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청소년 사업의 기획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분과위원회 혹은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사유로 위원이 위촉 해제가 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시험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청소년 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등)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고, 문화탐방·국제교류 등 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베이비부머의 은퇴, 생활의식 변화, 귀농·귀촌·귀향 희망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적극적 영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젊은 인력의 농촌유입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
- 귀농인 유입 촉진 및 안정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정착장려금 지원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주요내용

- 위 귀농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1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 ~ 2019. 02. 2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2. 21.(목)까지 공주시장(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주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 우편번호 32528
- 전화번호 : 041-840-8891 FAX : 041-840-2344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중 시에 “**이주한 20세 이상 60세 미만 귀농인에게**” 를 시에 “**이주하고 귀농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귀농인에게**” 로 하고,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정착 장려금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귀농 정착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귀농정착 장려금) ① 시장은 영농발전을 위해서 시에 <u>이주한 20세 이상 60세 미만 귀농인에게</u> 귀농 정착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귀농정착 장려금은 <u>300만원</u>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②·③ (생략)	제11조(귀농정착 장려금) ① ----- ----- <u>이주하고</u> <u>귀농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귀농인에게</u> --- ----- ----- <u>500만원</u> ----- ----- ②·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20조의2 신설)
 - (갑질금지)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1)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2)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 3)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 4)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 5)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규정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안 제21조의2 신설)

- **(해외출장 등 부당지원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및 과잉의전 등 요구 금지
 - 1)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 의무 신설
 - 2) 거절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 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조치
 - 3)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필요한 조치

□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 업무에 신설규정을 추가** (안 제26조 개정)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 금품등의 수수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 경조사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 금품등의 수수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 경조사의 통지 · <u>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u> · <u>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u>

□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31조 3항 신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 · 그 밖에 부패방지과 공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품위유지에 필요한 사항

3. 개정규칙안 : 별첨

4. 관계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공직자 행동강령 업무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5. 입법예고 : 2019. 2. 1. ~ 2019. 2. 2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감사담당관(감사팀)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 번호: 32552 / 전화: 041-840-2806 / FAX: 041-840-2308

7.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 칙 명 :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

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중 “**금품등의 수수**”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u> <u>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u> <u>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u>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제31조(교육) ① ~ ② (생략)

<신설>

제31조(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에 있어 단장 및 단원에 대한 구성과 운영, 직무에 대한 범위 및 임기, 보수 및 수당 등 현실과 불부합되는 조례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단원 등의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으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음.

2. 주요개정내용

-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2조)
- 운영계획수립(안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명확화(안4조)
- 단장 및 단원 등에 대한 직무규정 신설(안5조)

- 단원 등에 대한 위촉연령 상향조정(57세→60세)(안6조)
- 모집규정 신설(안7조)
- 임기 및 정년 위촉해제, 전형위원회 규정 명확화(안8~10조)
- 단원 등에 대한 평가, 복무, 보수, 강습, 수당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11~17조)
- 근무경력 인정(부칙 안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2. 1. ~ 2019. 2. 2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46 / FAX: 041-840-3708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참고 :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 원장·악장·상임단원·비상임단원·운영요원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악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국악원의 활동 계획
2. 국악원의 운영 및 기본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원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
 - 2.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
 - 1. 정기회의 : 연 1회
 -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원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원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장·악장·수석단원·차석단원·일반

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 한다.

③ 원장은 예술감독을 겸임하며, 국악원 공연과 강습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관리·감독을 수행 한다.

④ 악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상임단원은 수석단원·차석단원·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하고, 차석단원은 수석단원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운영요원은 국악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⑦ 단원등은 시민에 대한 국악공연 및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1. 원장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임단원 : 국악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비상임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비상임 원장의 경우 65세 이하로 한다.

제7조(모집)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집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1. 결원에 따른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국내·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제8조(임기)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경우 위촉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② 원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한다.

③ 단원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위촉기한 중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단원등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위촉해제 등급인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람

4.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깊이 관여한 사람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국악 강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8. 건강상의 이유로 단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9. 그 밖에 국악원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10. 제8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해제로 결정한 경우

②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단원등이 위촉해제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중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 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악원 원장을 단원 실기평가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제11조(정기평가)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차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단원등의 직급을 승급하거나 강등할 수 있다.

③ 정기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근무시간)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협연자등 보상금)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악강습) 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국악강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정근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경력을 증명한 경우에는 근무연수를 인정한다. 이 경우 정근수당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u>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전통국악의 계승발전</u> ----- ----- <u>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설치와</u> ----- ----- -----.</p>
<p>제2조(구성) ①국악원의 단장은 <u>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시설 사업소장으로 한다.</u></p> <p>②국악원은 <u>원장과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u></p> <p>③국악원의 운영을 위하여 <u>사무장 1인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u></p>	<p>제2조(구성) <u>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u></p> <p>1. <u>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악원 업무부서의장이 된다.</u></p> <p>2. <u>위촉직 : 원장·악장·상임단원·비상임 단원, 운영요원으로</u></p>

제3조(운영위원회) ①국악원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 및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국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악원의 기본운영계획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악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국악원의 활동 계획
2. 국악원의 운영 및 기본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원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

2.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자격 및 위촉) ①원장 및 부원장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상임단원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실기·면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비상임단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④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원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원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장·악장·수석단원·차석단원·일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 한다.

③ 원장은 예술감독을 겸임하며, 국악원 공연과 강습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관리·감독을 수행 한다.

④ 악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

⑤ 운영요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위촉연령) ① 단원 및 운영요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원장을 위촉할 경우
2. 건강상 강습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국악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상임단원은 수석단원·차석단원·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하고, 차석단원은 수석단원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운영요원은 국악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⑦ 단원등은 시민에 대한 국악공연 및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1. 원장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임단원 : 국악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

제7조(위촉기간) ①국악원의 모든 위촉직직원의 위촉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원장, 수석,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재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촉시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③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단원은 실기와 근무성적이 포함된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원장, 수석,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재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촉시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신 설>

는 사람

② 시장은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비상임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비상임원장의 경우 65세 이하로 한다.

제7조(모집) ① 단원등 및 운영요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정기평정) ①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번씩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②정기평정은 실기평정,근무평정,경력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형방법) ①이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원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집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1. 결원에 따른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국내·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제8조(임기)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경우 위촉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② 원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한다.

③ 단원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위촉기한 중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단원등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위촉

<신 설>

②전항의 전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제 등급인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람
 4.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깊이 관여한 사람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국악 강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8. 건강상의 이유로 단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9. 그 밖에 국악원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10. 제8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해제로 결정한 경우
- ② 제9조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전형위원) ①단원의 위촉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예능도 평정 및 예우기준 등의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국악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원장과 수석 단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국악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단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③ 단원등이 위촉해제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중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 -----
----- .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악원 원장을 단원 실기평가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전형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제11조(정기평가)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차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

2.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

3.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
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강
습활동이외 다른 공연에 출연하
거나 깊이 관여하여 국악원의 품
위를 손상시킨 자

5.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
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시민의 국악 교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8.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거나
선동한자

9. 기타 국악원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자

②정기평정 결과 그 예능과 근무성
적이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는 직책
을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
할수 있다.

제12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
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의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원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이를 보좌한다.

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수
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단원등의
직급을 승급하거나 강등할 수 있
다.

③ 정기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근무시간) 단원등 및 운영요
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근무시간은 규칙
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②국악원의 원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을 지휘·통솔한다.

③원장이하 모든 단원은 시민에 대한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복무) ①단원 및 운영요원은 정규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5조(단원의 급여) 단원 및 운영요원의 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협연자, 객원연주자의 보상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협연자등 보상금)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악강습) 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국악강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단원등 및

금 지급)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실비보상등) ①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악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단원과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개전형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국악강습) ①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악강습은 유료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수강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신분증 발급) 단원에게는 신
분증을 발급하며 인사기록카드에
의한 신상기록을 작성 비치 관리하
여야 한다.

제20조 (생 략)

<삭 제>

제18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공주시 공고 제 2019- 183호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규제영향 분석서 포함)

1. 개정이유

-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원의 임기, 휴가, 외부공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 합창단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계획(제3조)
 - 합창단의 활동계획, 합창단의 연간 공연계획 및 기본사항 규정
 - 그밖에 시장이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규정
- 운영위원회(제4조)
 - 시립합창단 업무의 국장과 업무부서의 장의 당연직 신설
- 단장 등의 직무(제6조)
 - 전공단원 중 수석단원제 및 부반주자 제도 신설
- 단원의 임기(제8조)
 - 단원의 연령(60세) 신설

- 단원의 모집(제9조, 제11조)
 - 당초 특별전형을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 모집
- 위촉해제(제10조)
 - 단원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화
- 활동비 및 보상금 등(제12조, 제13조)
 - 단원등 활동비 및 보상금, 수당등 세분화
- 외부공연 및 출연(제15조)
 - 합창단의 외부 출연공연 및 출연료 규정 신설
- 위원회 수당 및 여비(제16조)
 - 선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등 수당 신설

3. 입법예고기간 : 2019. 2. 1. ~ 2019. 2.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1일까지 공주시장(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46 FAX : 041-840-3708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안)

조례명 :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주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공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 지휘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1. 합창단의 활동 계획
2. 합창단의 연간 공연계획 및 기본사항
3. 그밖에 시장이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3조의 운영계획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립합창단 업무의 국장

2. 시립합창단 업무부서의 장

3.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립합창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지휘자·반주자·단무장·단원(이하“단원등”이라 한다)을 지도 및 감독 한다.

③ 지휘자는 예술감독을 겸임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반주자 및 부반주자는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 한다.

⑥ 단원은 수석단원, 전공단원,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단원의 연습을 지도한다.

⑦ 단원등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주시립합창단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1. 지휘자 :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주자 및 부반주자 : 합창공연에 반주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단무장 :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

4. 전공단원 : 음악을 전공한 사람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일반단원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② 최초 위촉된 단원등은 시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① 단원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연령은 만60세 이하로 한다.

제9조(단원등의 모집) ① 단원등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모집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8조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등에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단원 중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람
2.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재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연속 3회 연습에 불참하거나, 연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6.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서 공연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적격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

② 일반단원은 제10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단원이 위촉 될 때까지 단원의 자격을 유지 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일반단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는 단원등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 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단원등을 선정하고 정기평가를 위하여 공주시립합창단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

2.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이 종료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제12조(활동비 및 보상금등) ① 단원등의 활동에 필요한 보상금 및 공연수당과 예능연구수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합창단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 및 객원자의 보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단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 등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여비 등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입장료) 합창단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5조(외부공연 및 출연) ① 합창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공연단체 등에서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 할 수 있다.

② 출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③ 단원등이 합창단의 공연과 연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출연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선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하지 아니 한다.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심규덕 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최덕근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 조성상						
4. 근거법령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정년) -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주시립합창단원	50명		입법예고중		
	이해 관계자	공주시립합창단원	50명		입법예고중		
6. 규제존속기한	조례 개정 또는 폐지 시까지 존치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제8조(임기) ① 단원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u>② 단원의 연령은 만60세 이하로 한다.¹</u></p> <p>제10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등에서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일반단원 중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람 2.~ 7. 내용생략.....</p> <p>② 일반단원은 제10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단원이 위촉 될 때까지 단원의 자격을 유지 하는 것으로 본다.</p> <p>③ 일반단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u>15일 이내에 단장에게 신고²</u>하여야 한다.</p> <p>④ 제1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는 단원등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위촉연령
 - 공무원, 공무직 직원 등 의 정년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합창단의 노령화 예방
 - 신규단원과 기존단원의 순환에 따른 합창단 실력향상
 - 충남교향악단(위촉연령 57세/위촉기한2년), 연정국악원(위촉연령 57세/위촉기한2년)등과 형평성 유지
- 신고의무
 - 합창단원 모집시 공주시 거주 후 타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됨에도 단원 신분 유지
 - 공주시립합창단의 자격확인을 위한 단원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지 신고의무 부과
 - 실제거주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이전 사례 발생 등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공주시립합창단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성 있는 시립합창단 운영

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라.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공주시립합창단원의 연령과 거주지 제한을 통해 합창단원으로서 자격을 명확히 함.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1. 2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26-2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01.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 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 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상부 주소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봉향동 326	충청남도 공주시 봉향로 26-2 (봉향동)	2019.01.21.	신축	20100202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100-1, 100-4, 100-7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길 95 (금학동)	2019.01.2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403-1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길 15 (신기동)	2019.01.21.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41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27 (신관동)	2019.01.21.	신축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4-1	충청남도 공주시 천막1길 7 (신관동)	2019.01.2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82, 83	충청남도 공주시 연미산길 38 (월미동)	2019.01.2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60-6	충청남도 공주시 요동길 42-12 (송선동)	2019.01.2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60-6	충청남도 공주시 요동길 42-14 (송선동)	2019.01.2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노동리 5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노동길 61	2019.01.21.	신축	20100112	노동리의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노동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244-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93	2019.01.21.	신축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659-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부실길 38-16	2019.01.21.	신축	20120222	입석리의 보리실 서쪽에 있는 마을로 부자동네가 되라는 뜻으로 서부실이라 부른다 하여 서부실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659-4, 659-1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부실길 38-18	2019.01.21.	신축	20120222	입석리의 보리실 서쪽에 있는 마을로 부자동네가 되라는 뜻으로 서부실이라 부른다 하여 서부실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51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고분터로 170-10	2019.01.21.	신축	20100112	발양 ~ 반송을 지나는 길의 고개 이름을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산56-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효자문길 8-148	2019.01.21.	신축	20120106	효자가 살았던 마을이며 효자문이 있어서 효자문길이라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현리 248-11, 248-2, 248-6, 삼성리 4-6, 4-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마루길 2-1	2019.01.21.	신축	20100112	마을이 꽃에 둘러 싸여 있다 하여 생김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204-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2길 13	2019.01.21.	신축	20100112	신소의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생김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혼합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도로명 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 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정상부 주소 계획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4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8-9	2019.01.21.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31, 43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7-8	2019.01.2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1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흘성리 220-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492-53	2019.01.21.	신축	2010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2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99-58	2019.01.21.	신축	20100202	도로의 끝지점에 연수원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연수원을 가는길이라 인식, 연수원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14-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고복로 114-79	2019.01.21.	신축	20100302	공주시 도신리와 연기군 고복저수지의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특성 조합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57-3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376-24	2019.01.21.	신축	20111209	내산리, 도천리, 동곡리, 반촌리, 목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도로의 기점인 내산의 명칭과 종점인 목천의 명칭을 활용하여 내산목천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2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73-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58	2019.01.21.	신축	20100112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24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133-16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수봉갑길 416-44	2019.01.21.	신축	20100112	용수리와 봉갑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수봉갑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1. 2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길 33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01.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461-3, 461-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461-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백제큰길 63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백제큰길 632	2019.0 1.11.	건물번호 분할에 따른 관련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461-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461-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백제큰길 63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백제큰길 630	2019.0 1.11.	건물번호 분할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115-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115-14	2019.0 1.11.	관련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22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22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길 2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길 29	2019.0 1.14.	관련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22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22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길 3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길 33	2019.0 1.14.	관련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1. 2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1길 7 외 5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01.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4-1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1길 7	2019.01.09.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1-4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1길 11-1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3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74-1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1길 15-2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2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1길 11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3-3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1길 9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36-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5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3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7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3-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10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3-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12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5-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14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9-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15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5-2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16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9-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17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5-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18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5-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20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5-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3-22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4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어천길 1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38-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어천길 6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1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9-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4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2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8-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20	2019.01.10.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 말소
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84-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425	2019.01.10.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82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용두길 9-6	2019.01.10.	2018 일제조사로 건물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폐지
23	충청남도 공주시 단천면 안영리 47-3	충청남도 공주시 단천면 만마름길 7	2019.01.11.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219-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길 218	2019.01.11.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410-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용수동길 162	2019.01.11.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83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범박골길 11-16	2019.01.11.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3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7-12	2019.01.11.	건물 말소
2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52-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수춘중앙길 37-7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8-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숫절길 16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55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산수골길 70-6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1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새말길 48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58-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설동안길 3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58-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설동안길 7-2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547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23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안동해동길 233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6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336-4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2길 22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7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백룡리 715-4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용못길 16-8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산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어사길 56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65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새말길 17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57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입석절골길 42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35-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1길 133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42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161-3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9-5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13-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530-11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4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79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1길 11-1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268-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초교길 31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28-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6-4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38-7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8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6-5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2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49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85-3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5-2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50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85-2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15-4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5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69-7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23-1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69-2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1길 23-1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5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1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길 49-31	2019.01.1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